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201
------	------

2022. 6. 14.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5월 27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2. 6. 14.)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의승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라 기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안 제21조제1항 삭제).
 - 존속기한 : 2021. 8. 19. ~ 2022. 8. 18.(1년) ※ 최초설치 : 2016. 8. 19.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2022년 8월 19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을 폐지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나. 한시기구의 운영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기구·정원규정’)에 따르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8조제1항)¹⁾.
 - 한시기구는 조례로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최장 6년)할 수 있음(제8조제4항·5항)²⁾.
- 서울시는 현재 한시기구로 ‘남북협력추진단’ 과 ‘문화시설추진단’ 을 운영하고 있음.

1)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2)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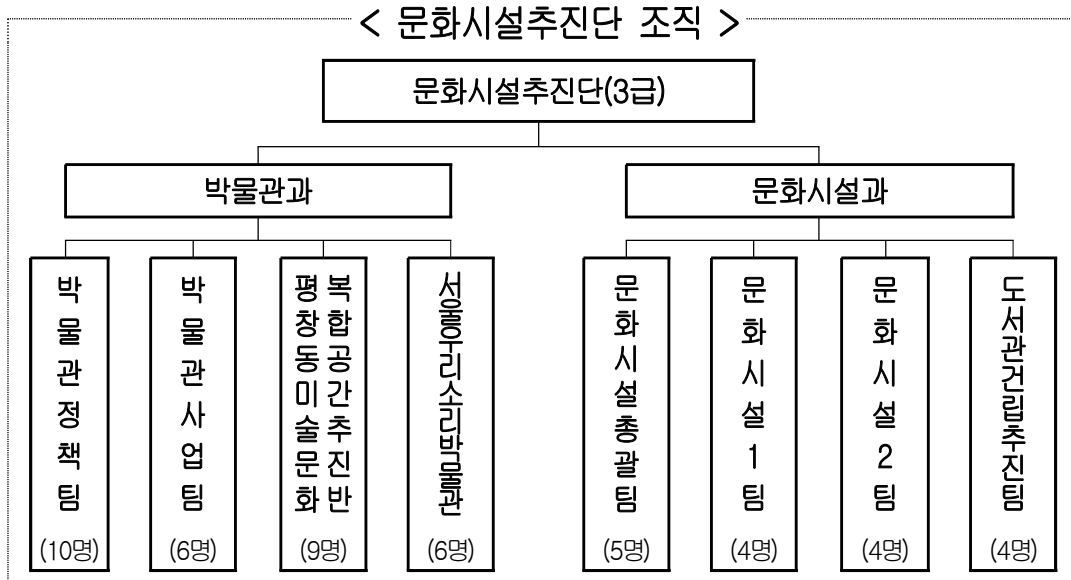
- 「행정기구·정원규정」에 따르면, 시·도에서 3급 이상의 한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제21조)³⁾, 행정안전부장관은 한시기구의 적정성, 성과목표 달성도, 행정수요 전망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의 연장을 승인하고 있음.

< 서울시 한시기구 운영 현황 >

부서명	존속기한	주요업무
남북협력추진단 (3급)	'21.11.1 ~ '22.10.31(1년) ※ 최초신설 : '18.11.1	·남북교류사업 총괄 및 사회문화교류, 통일기반 조성
문화시설추진단 (3급)	'21.8.19 ~ '22.8.18(1년) ※ 최초신설 : '16.8.19	·미술관 등 건립 및 진흥 ·박물관 건립 및 진흥

- 2016년 8월 신설된 ‘문화시설추진단’은 1단·2과·8팀(총 5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박물관 및 문화시설 건립 총괄, ▶ 박물관·미술관 건립 타당성 및 설계용역, ▶ 신설 박물관 전시 및 운영계획 수립, ▶ 박물관 및 문화시설 네트워크 구축, ▶ 신규 시립도서관 및 자치구 문화시설 건립 등 총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임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 (장과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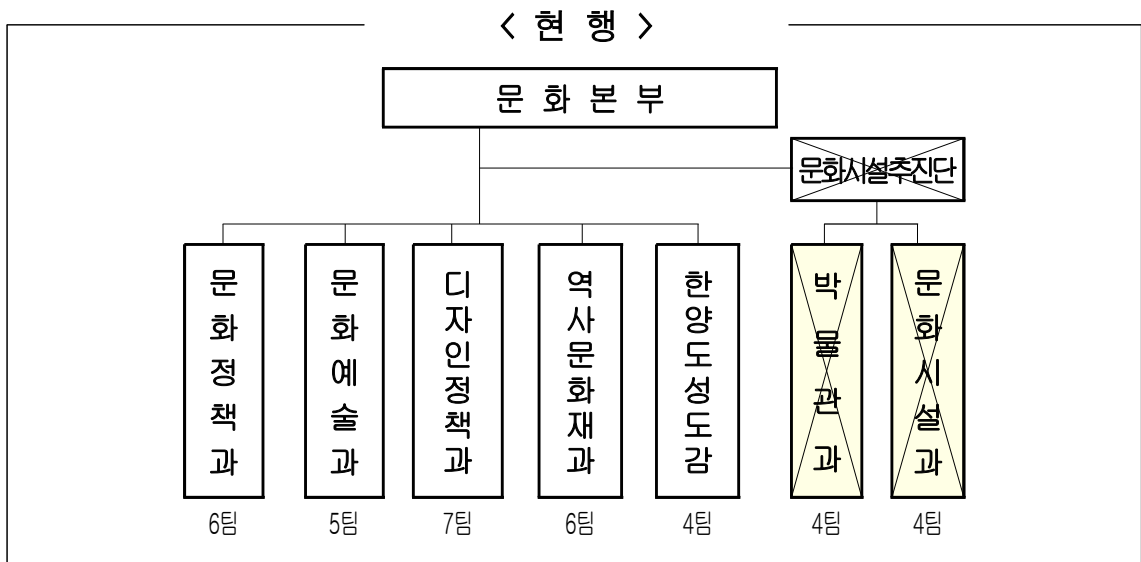
- 그동안 ‘문화시설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매년 존속기한을 1년씩 연장하여 왔으나, 오는 8월 최장 6년의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연장(1년, 5차)에서 존속기한 만료시 즉시 폐지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함(2021. 2. 8.).

다. 문화시설추진단의 폐지(안 제21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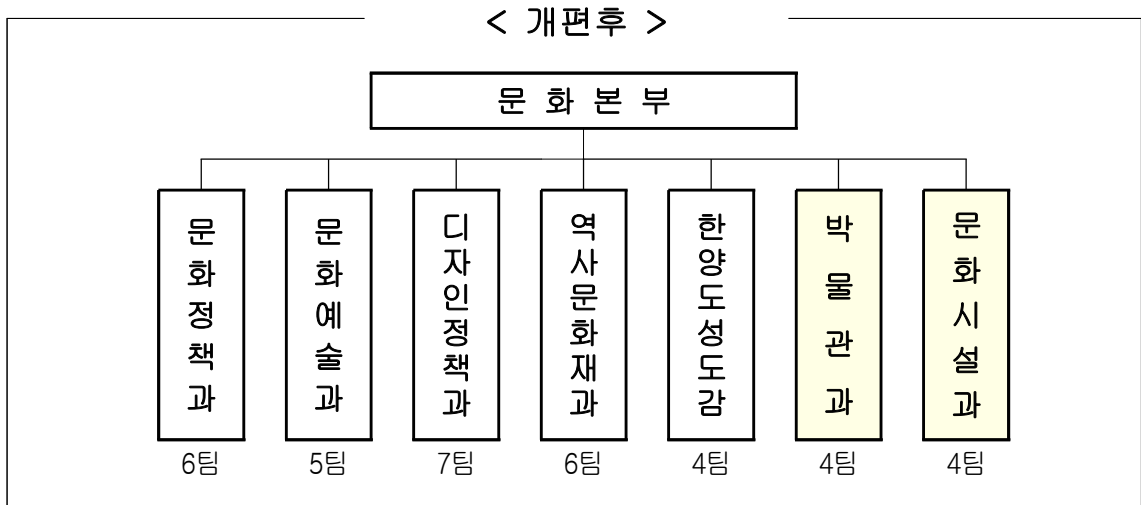
- 문화시설추진단은 각종 박물관과 문화시설의 기획부터 건립에 이르는 전 업무를 총괄하고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 등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문화본부 산하의 3급 전담기구로 2016년에 신설됨.

- 현재까지 총 25개 문화시설 중 박물관과 미술관 15개소(60%)의 조성을 완료하거나 공사 단계까지 진행하는 성과를 달성함⁴⁾.
- 서울시는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구 설치 목적의 상당 부분이 실현되어 3급 기구로의 존속 필요성이 약해진 것으로 보고, 한시기구의 폐지와 함께 산하 박물관과와 문화시설과를 문화본부 직속 4급 기구로 재편하게 됨.
- 박물관과와 문화시설과의 기구(명칭, 팀 개수 등)와 정원 등은 변동 사항 없이 현행대로 유지되고, 문화시설추진단장(부이사관)의 정원 감축만 있음(2022. 8.19. 시행).

< 문화본부 조직 개편(안) >



4)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등의 8개 시설은 준공이 완료돼 운영 중이고,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서서울미술관, 서울사진미술관, 통합수장고 등의 7개 시설은 공사 진행(예정) 단계에 있으며, 권역별 시립도서관 6개소, 제2세종문화회관 등 10개 시설은 공유재산심의 등의 사전절차가 진행 중임(참고자료 참조).



- ‘문화시설추진단’의 폐지에 맞춰 박물관과와 문화시설과는 문화본부 직속의 정규기구로 되어 문화시설 건립과 운영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임.
- 다만, 권역별 서울시립도서관과 제2세종문화회관 등의 문화시설 건립이 준비 단계에 있으므로, 한시기구의 폐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들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과 관리대책이 필요함.

[참고자료]

□ 서울시 문화시설 건립 추진현황(2022. 6월 기준)

○ 준공 8개소, 공사(예정) 중 7개소, 사전절차 준비 단계 10개소

연번	명칭	위 치	연면적(m ²)	추진현황	주용도
1	서울생활사박물관	노원구 공릉동	6,919	운영중('19.9. 개관)	박물관
2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종로구 와룡동	1,385	운영중('19.11. 개관)	박물관
3	서울공예박물관	종로구 송현동	10,653	운영중('21.9. 개관)	박물관
4	삼청각	성북구 대사관길	4,399	리모델링 공사완료('22.5. 재개관)	문화시설
5	평화문화진지	도봉구 도봉동	2,155	운영 중(2017년 개관)	창작
6	서울 예술교육센터	용산구 한강로3가	4,085	운영 중(2020년 개관)	교육·체험
7	서울성북 미디어 문화마루	성북구 길음동	9,837	운영 중(2021년 개관)	복합
8	서울미디어랩 구축	성북구 길음동	605	운영 중(2021년 개관)	미디어
9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종로구 평창동	5,590	공사중('22.9. 개관예정)	미술관
10	서서울미술관	금천구 독산동	7,098	공사중('24.하반기 개관예정)	미술관
11	사진미술관	도봉구 창동	7,048	착공준비('24.하반기 개관예정)	미술관
12	통합수장고	강원도 횡성	9,137	착공준비('24.하반기 개관예정)	박물관
13	(가칭)이건희 기증관	종로구 송현동	30,000	'24년 착공, '27년 준공예정	박물관
14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동대문구 전농동	35,200	설계공모 준비	도서관
15	서울시립도서관(서대문)	서대문구 북가좌동	9,000	설계공모 준비	도서관
16	서울시립도서관(관악)	관악구 신림동	6,541	설계공모 준비	도서관
17	서울시립도서관(강서)	강석 내발산동	11,020	공유재산심의 준비	도서관
18	서울시립도서관(도봉)	도봉구 방학동	10,519	공유재산심의 준비	도서관
19	서울시립도서관(송파)	송파구 장지동	11,534	타당성조사(리맥) 준비	도서관
20	창작연극지원시설	성북구 동소문동	7,225	공사 중	공연장
21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강북구 미아동	4,725	공사 중	교육·체험
22	(가칭)제2세종문화회관	영등포구 문래동	27,930	설계공모 준비	공연장
23	통일문화센터	강북구 수요동	656	설계 중	교육·체험
24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종로구 혜화동	1,017	공사 중	복합
25	정릉차고지 문화복합시설조성	성북구 정릉동	798	사업계획 검토	기타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01
----------	------

제출년월일 : 2022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라 기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안 제21조제1항 삭제)

- 존속기한 : '21. 8. 19. ~ '22. 8. 18.(1년) ※ 최초설치 : '16. 8. 1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2. 5. 9. ~ 5. 13.)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1조(한시기구) ① 문화시설 건립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문화본부에 한시적으로 문화시설추진단을 두며, 문화시설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삭 제></p>
<p><u>1. 미술관 등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u></p>	<p><삭 제></p>
<p><u>2. 박물관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u></p>	<p><삭 제></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기구 정비(폐지)는 재정지출의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유진 (☎ 2133-6729)